

제7조 (입소계약에 관한 사항)

제7-1조 (계약기간)

- 계약기간

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. 단 급여비용 변경 등으로 인해 매년 1월에 변경된 급여비용으로 재계약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.

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(등외 판정),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, 노인복지법 제34조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.

가.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.

나.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.

다. 등급 변동,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.

- 준수사항

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,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.

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서식으로 제공한다.(단, 계약서에는 기간, 급여의 종류,급여비용,비급여,개인정보보호,분쟁해결,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.)

* 이용절차

① 신청접수 → ②사전방문 → ③사정회의 → ④서비스 계약체결 → ⑤서비스 제공 → ⑥사후관리

1. 신청접수 :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/ 건강관리공단, 구청,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-

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

2. 사전방문(초기면접) :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(건강상태, 개인 신상,

주거환경, 서비스 제공여부 등)

3. 사정회의(욕구사정):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

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, 1일 서비스 제공기간, 일정 등을 결정한다.

4. 서비스 계약체결 :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,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

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.

※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※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5. 서비스 제공 : 가정방문(방문요양, 방문목욕)하거나 대상자를 기관으로 이송 (주야간 보호, 단기보호)하여 서비스 제공

6. 사후관리 :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, 서비스 제공 후 심신 상태 변화체크

제7-2조 (계약목적)

- **계약목적** : 노인복지법,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,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.

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

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

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

④ 기관이용 어르신의 이용절차, 이용수칙, 사고대비, 책임성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. 이용어르신과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

(이하 “계약서”로 한다)로 체결하여야 한다.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 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.

제7-3조 (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)

[첨부 1]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본 수가 (월 한도액)

본인부담금 내역	기초수급자	0% 부담
	차상위계층,보훈대상자, 기타의료수급권자	12%, 8% 부담
	일반수급자	20% 부담

[첨부 2] 비급여항목에 대한 이용료 (단위:원)

비 급 여 항 목	비급여 항목	산출근거	금액(28일)	금액(30일)	금액(31일)	비고	등록일
	식재료비	2,900원X3식	243,600	261,000	269,700		2021.01.01
	간식비	1,000원X1식	28,000	30,000	31,000		2021.01.01
	이미용비	자원봉사자 활용	무료	-	-	외부시설 이용시 실비.	.
	상급 침실료	해당없음	해당없음	-	-	*개인 요구시 적용	

[첨부 3]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급여제공 부담내역

등 급	일 수	1일 단가	월이용수가 (100%)	공담부담 금 (80%)	공담 (88%)	공단 (92%)	본인부담 (20%)	본인부담 12%	본인부담 8%
1 등 급	28 일	71,900	2,013,200	1,610,560	1,771,610	1,982,140	402,640	241,590	161,060
	30 일		2,157,000	1,725,600	1,898,160	1,984,440	431,400	258,840	172,560
	31 일		2,228,900	1,783,120	1,961,430	2,050,590	445,780	267,470	178,310
2 등 급	28 일	66,710	1,867,880	1,494,300	1,643,730	1,718,450	373,580	224,150	149,430
	30 일		2,001,300	1,601,040	1,761,140	1,841,200	400,260	240,160	160,100
	31 일		2,068,010	1,654,410	1,819,850	1,902,570	413,600	248,160	165,440
3 등 급	28 일	61,520	1,722,560	1,378,050	1,515,850	1,584,760	344,510	206,710	137,800
	30 일		1,845,600	1,476,480	1,624,120	1,697,950	369,120	221,480	147,650
	31 일		1,907,120	1,525,700	1,678,270	1,754,850	381,420	228,850	152,570

* 1일 수가(2021년도 현재)

1등급 ₩ 71,900 2등급 ₩ 66,710 3~5등급 ₩ 61,520

제10조 (이용료 및 비용 변경)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.

1.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
2.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
3.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